

# 협력업체 행동규범

## <서문>

삼화페인트공업(주) 협력업체 행동규범은 삼화페인트공업(주)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.

본 행동규범은 삼화페인트공업(주)과 협력업체간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업체의 경영활동에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노동, 안전보건, 환경, 윤리, 경영시스템에서 지속가능한 운영 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.

삼화페인트공업(주)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. 삼화페인트공업(주) 및 삼화페인트공업(주)의 위탁을 받은 외부 기관은 협력업체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업체를 점검 및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본 행동규범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삼화페인트공업(주)은 법규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에서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, 협력업체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.

본 행동규범은 RBA(Responsible Business Alliance)의 행동규범을 참고하였으며, 본 행동규범과 현지 법규의 내용이 상충할 시에는 해당 국가의 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.

## <본문>

### 가. 노동

#### 1) 강제노동 금지

비자발적 노동이나 착취, 노예제 및 인신매매를 포함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해서는 안됩니다. 근로조건을 포함한 고용계약서를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.

#### 2) 아동노동 금지

아동 노동은 모든 단계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. 18세 미만의 근로자(연소 근로자)는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해서는 안되며, 해당 법규 따라 적절한 관리 및 교육을 보장해야 합니다.

### 3) 근로시간

근로시간은 현지법에 규정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. 초과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휴가제도 등 노동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.

### 4) 임금과 복리후생

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최저임금, 초과근무수당 및 법정수당 관련 법률을 비롯해 모든 급여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.

### 5) 차별 금지

협력업체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 임금, 승진, 보상, 교육 기회 등 채용 및 고용 활동에서 인종, 연령, 성별, 국적, 장애, 종교, 정치적 견해, 노조 가입 여부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.

### 6)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

협력업체는 근로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단체교섭권,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.

## 나. 안전보건

### 1) 산업 안전보건

근로자가 안전보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위해요소를 완화해야 합니다. 위해요소를 통제할 수 없을 경우,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구 및 관련 위험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.

### 2) 비상사태 대응

잠재적 비상사태를 파악 및 평가하고 비상 대책과 대응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. 비상 대책과 대응 절차에는 비상 상황 보고, 직원 통지 및 대피 절차, 근로자 교육 및 훈련이 있습니다. 이러한 비상 계획 및 절차는 인명 피해와 환경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합니다.

### 3) 산업재해/산업위생

산업 재해와 질병에 대한 예방, 관리, 추적, 보고 절차 및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.

관리체계에 따라 화학적, 생물학적, 물리적 인자에 대한 직원의 위해요소를 파악, 평가 및 통제해야 합니다. 협력업체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, 이는 근로자 건강 및 작업 환경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지되어야 합니다.

#### 4) 안전보건 커뮤니케이션

협력업체는 기계, 전기, 화학, 화재 및 물리적 위험 등을 포함한 모든 확인된 작업 현장 위험에 대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장 안전보건 정보와 교육을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.

### 다. 환경

#### 1) 환경 허가

요구되는 모든 환경 관련 허가, 승인 및 등록을 취득하고 유지하며,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.

#### 2) 오염물질 및 자원 관리

온실가스 배출, 오염물질 배출, 폐기물 발생량을 관리하여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 에너지와 물자원 사용에는 재사용, 보존, 재활용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.

#### 3) 유해물질/폐기물

화학물질, 폐기물의 안전한 취급과 이동, 보관, 사용,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를 보장하기 위해 유해물질을 파악하여 라벨을 표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.

### 라. 윤리

#### 1) 사업 청렴성

모든 사업활동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 협력업체는 뇌물, 부패, 갈취 및 횡령을 금지하는 정책을 써야 합니다.

#### 2) 정보공개

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실행하고 이를 협력업체의 장부와 기록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. 협력업체의 노동, 안전보건, 환경관리, 사업 활동, 구조, 재무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관련 규정 및 일반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.

### 3) 공정거래

공정거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
### 4) 책임 있는 광물 조달

협력업체는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획득한 원자재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.

### 5) 개인정보 보호

협력업체는 공급업체, 고객사, 소비자 및 직원을 비롯해 업무상 관련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 협력업체는 개인정보 수집, 보관, 처리, 전송 및 공유 시 정보 보안 법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.

## 마. 경영시스템

### 1) 기업의 준수 의지

협력업체는 인권, 안전보건, 환경 및 윤리와 관련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의지를 대내·외에 약속해야 합니다.

### 2) 법률 및 고객 요구사항

협력업체는 본 규범의 요건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, 규정 및 고객의 요구 사항을 파악, 모니터링, 이해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확립해야 합니다.

### 3) 위험평가 및 관리

협력업체는 컴플라이언스, 환경, 안전보건, 노동관행, 윤리 위험을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. 협력업체는 식별된 위험을 통제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

### 4) 교육

협력업체는 정책, 절차, 개선 목표를 실행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.